

보도시점 2026. 1. 29.(목) 배포 시 2026. 1. 29.(목)

농지법, 현장 목소리 담았다...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현장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업 현장에서 여성, 청년 농업인들이 제기한 화장실, 주차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생리현상 해결이나 차량 주차 등 농작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였다. 농지의 규모화나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해당 사업은 그간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족하여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시행자가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사업

아울러, 샵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한 농촌 특화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촌 공간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지구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그전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지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44-201-1731)
		담당자	서기관	이원형 (044-201-1735)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 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부지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 ----- ----- ----- ----- ----- -----.
6.·6의2. (생략)	6.·6의2. (현행과 같음)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생략)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 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7. -----

-----제1호
나목 또는 다목-----
-----.

8.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 농업·농촌및

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외의-----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생략)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 ④ (생략)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 하는 농지
<신 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 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 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 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 경신청) ----- ----- ----- ----- -----.
1. 2. (생 략) <신 설>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 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